

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04월 03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시립학교 운영위원회에 예·결산소위원회 설치를 명문화 하여 예·결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조항에 해당연도 4월 1일 기준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에 예·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(안 제16조제1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62, 팩스 032-440-8784, 이메일 : bks3245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사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 고
○ 주 소 :			
○ 성 명 :			
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단서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.

1. 급식소위원회
2. 예·결산소위원회(단, 해당연도 4월 1일 기준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에 한함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제16조(소위원회 설치)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u>다만,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 각각 학교급식소위원회 또는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한다.</u> <신 설> <신 설> ② ~ ④ (생략)	제16조(소위원회 설치)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.</u> <u>1. 급식소위원회</u> <u>2. 예·결산소위원회(단, 해당연도 4월 1일 기준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에 한함)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

관련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초·중등교육법 ○ 제34조(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☐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○ 제60조의2(소위원회) ○ 제62조(조례 등에의 위임) ☐ 유아교육법 ○ 제19조의5(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☐ 유아교육법 시행령 ○ 제22조의10(소위원회) ○ 제22조의11(조례 등에의 위임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조례의 내용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

4. 작성자

-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

관계법령 발췌

【초·중등교육법】

제34조(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3.21]

【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】

제60조의2(소위원회)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,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·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3.18]

제62조(조례 등에의 위임)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【유아교육법】

제19조의5(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3.21]

【유아교육법 시행령】

제22조의10(소위원회) ①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·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며,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·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,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8.31]

제22조의11(조례 등에의 위임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·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규칙으로,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8.31]